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 개415- 66	(전화번호 75-6593)	전 결 규 정 조 랑 전 결 사 랑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결재 1975. 1. 28		
보존 번호	고시제 14호		
보조 기관	제2부시장	합 법무담당관(고시문집사) 시민과장 문서관리계장 종합계획계장	조 장
	도시계획국장		
	도시계획과장 주23 가토 계획계장		
기안책임자	이평재	75.1.22. 양규승	종합계획계장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 시장	통 검열 1975. 1. 28 서울특별시 통계국
제 목	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		
제1안 내부결재			
1. 시설결정코져 하는 주차장은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이 시설 미비로 시설개선명령 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(우이동-수유동 간 25미터분 용지가 수용되고 잔여지로는 협소하여 시설개선과 차량 수용이 불가능하여 인접지에 용지확보하여 2개사 공동으로 주차장 과 부대시설을 하여 시민교통에 공하고져 하니 시설결정하여 답라는 운수 회사로 부터 신청이 있어			
2. 본안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차 (75.1.21.) 심의에 부의 하였던바, 별첨심와안및 회의록과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(73.4.4)의 건설부장관의 권한 위임사항에따라 이를 결정고시코져 합니다.			
제2안 고시안			
서울특별시고시 제 호			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및 지적승인			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다음과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(73.4.4) 외 규정에따라 이를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.

고시안심사	1975. 1. 26	제 10 호
심사자	법제계장	법무국장
	전결	

1975. 1.

서울특별시장

1. 주차장시설 조서

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주차장(노외)	우이동178외1외 1필지	4,482.5 (1,325 평)	영진교통및 영신여객 주식회사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및 도봉구청에보관함.

제3안

수신 | 건설부장관

발신 시장

제목 | 동 건

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외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(73.4.4) 외 권한위임 사항에따라 별첨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.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

제4안

수신 | 총무저장관(서울시:문화공보실장)

발신 시장(과장)

제목 | 관(시)보 게재외뢰

1. 다음과같이 관(시)보에 게재외뢰(2)니 게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75. 1. 21

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

(제 1 차 회의)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

제 / 차 회의 요약

안건 1 : 도시계획도로 (대 2-29호) 일부변경

원안 가결 통과

안건 2 : 도시계획광장 (만리동광장) 일부변경 (추가)

원안가결 통과

안건 3 : 도시계획시설 (노외주차장) 결정

원안 가결 통과

안건 4 : 도시계획시설 (소로) 일부변경

원안 가결 통과

안건 5 :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변경

원안 가결 통과

안건 6 : 서울 도시계획 공원폐지

원안 가결 통과

안건 7 : 도시계획 공원 및 풍치지구 일부변경

원안 가결 통과

안건 8: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

원안가결 통과

안건 9: 학교용지 시설결정

가 여의도 여자중고등학교

원안가결 통과

나 한양대학교

다음 회의에서 심의검토 처리키로가결

안건 10: 시장용지 시설결정

가 여의도동 1-892

원안가결 통과

나 무려가시장 양성화

총 2개 중 2개 안건은 보류키로하고

원안 가결 통과

안건 11: 도시계획도로 (계계밭지구내) 신설

원안 가결 통과

회의록

1. 일시 : 75. 1. 21 16:30
2. 장소 : 도시계획과장실
3. 안건 : 1 도시계획도로 (대2-28) 일부변경 -
2 도시계획광장 일부변경 (추가)
3 도시계획시설 (노외주차장) 결정
4 도시계획시설 (소로) 일부변경
5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변경
6 도시계획공천 해제 (폐지)
7 도시계획공천 및 풍치지구 일부변경
8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
9 학교용지 시설결정
10 시장용지 시설결정
11 도시계획도로 (재개발사업지구내) 신설

※ 참석위원

부위원장 손정복 위원회 // 명

5. 기타 감사자

권사 (도시계획과장) 서기 (종합계획계장)

이가로계장 김 재개발계장 지역계장 (대)

상점파 상점계장 주택개발 2과장

6. 기 록

이 응 섭

회 의 내 용

※ 위원장 불참으로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맡음

이카로계장 : 74년도 18차 회의 결과보고 낭독 (생략)

위원일동 : 동 의

안건 1 : 도시계획도로(대2-28) 일부변경

이카로계장 : 제안설명 (생략)

부위원장 : 건설부에 올라가는가

찬 사 : 이미 지적 고시가 났기때문에 건설부에
올라 갑니다

부위원장 : 기존에서 변경코자하는 선파의 차이는

이카로계장: 약 40% 폭편 차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

새로이 변경될경우 거죽이 12동 걸리게

되는 거죠

부위원장 : 현장을 가보나 알바 현상대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

위원 일동 : 제안 동의

안건 2 : 도시계획 광장 일부변경 (추가)

이가로계장 : 제안설명 (생략)

나상기위원 : 그렇게 환경이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을것 같다

부위원장 : 우선 치정해 놓고 시공상의 문제 및 교통계획은 나중에 검토해 하자.

위원 일동 : 제안 동의

안건 3 : 도시계획시설 (시외버스주차장) 결정

이가로계장 : 제안설명 (생략)

위원 일동 : 제안동의

안건 4 : 도시계획 시설 (소로) 일부변경

이가로계장 : 제안설명 (생략)

나상기위원 : 폐지할 경우 도로연결 등 지장이 없는지

이가로계장 : 현황도 설명 (생략)

위원일동 : 제안 동의

안건 5 :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 변경

지역계장 (대) : 제안설명 (생략)

관 사 : 보충설명 (생략)

나상기위원 : 현재 있는 서울빌딩에 대하여는

관 사 : 그대로 합니다

위원일동 : 제안 동의

안건 6 : 도시계획공원 해제 (폐지)

지역계장 (대) : 제안 설명 (생략)

나상기위원 : 평수는

관 사 : 6,300 평입니다

나상기위원 : 그정도면 근린공원 가능한데

간 사 : 보충설명 (생략)

위원 일 등 : 제안동의

안건 7 : 도시계획공원 및 등치지구 일부변경

지역계획계장(대) : 제안설명 (생략)

주책계장 2파장 : 보충설명 (생략)

주증원 위원 : 나머지 공원응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요

지역계장(대) : 그렇습니다

위원 일 등 : 제안 동의

안건 8 : 도시계획 구역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

지역계장(대) : 제안설명 (생략)

간 사 : 보충설명 (생략)

내상기위원 : 개인소유량이 많은줄 아는데

간 사 : 지주의 동의를 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

서명갑위원 : 기존주택이 많은지역 같은데

간 사 : 기존주택은 되도록 제외했죠

이정환위원 : 본인이 원거로는 상당국에서 벌써 2-3년전
발표해 놓은 몇몇 토지구획정리지역에도 아직까지
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가지재산에 막대한
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새로운곳을 또 구획
정리한다고 하는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런것
은 당국에서 시정해나가야 될줄안다

이우현위원 : 도면을보니 천호 구획정리사업지구와 본 신정지
와 서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분당생각
같이서는 가운데 원안지구도 차제에 포함
시켜서 연결시켰으면 한다

간 사 : 제외한 이구는 기존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
이어서요

위원 일동 : 제안 동의

안건 9 : 학교용지 시설결정

가 여의도 여자중고등학교

지역계장(대) : 제안 설명 (생략)

이원환위원 : 언제는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더니 그것을 또
줄여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군요.

지역계장(대) : 당초보다 관계부처 협의에 의해 어쩔수

없이 변경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

위원 일동 : 제안동의

나 한양대학교

지역계장(대) 제안 설명 (생략)

나상기위원 : 신청지는 전부가 학교소유인가

지역계장(대) : 그렇습니다

서영갑위원 :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. 본인이

알기로는 도면을 보니 문제점들이 많을것 같다

나상기위원 : 학교측이나 아니면 좀더 상세한 설명이

있었으면 한다

간 사 : 그럼 본건에 대하여는 실무진에서 현황등

좀더 깊이도 확인한후 다음 회의에서

심의회에 주셨으면 합니다

위원 활동 : 제안동의

간 사 : 그럼 본건은 다음 회의에서 개심의 취로
되었습니다

안건 10 : 시장응지 시설결정

가) 여의도동 1-892

간 사 : 제안설명 (생략)

주중원위원 : 건물미판 관계등에 대하여는

간 사 : 별도 미판지구심의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겠습니다

위원 활동 : 제안 동의

나 무허가시장양성화 (총 28개소)

간 사 : 제안설명 (생략)

무허가 시장양성화에 따른 관계관 회의 및

처리방침에 대한 현황설명 (생략)

이원환위원 : 총 28개소를 하나 하나 심의 한다는 것은

시간관계도 있고하니 그런 실무자 및 관계관
회의와 사전 협의 그리고 이미 양성과
방콕에 대한 지침을 세웠더니 그중 도시계획
법이나 시장법에 의해 검토한 결과 문제
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심의키로 하자

간 사 : 2개소중 2개소는 현지 주택장기사업지구내
있어서 사업완 토시에 다루기로 했음

상정파장(예):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 및 현황설명
(생략)

주중권위원 : 학교와는 300m 시장과는 500m 에 저축은
않되네요

상정파장(예): 저축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
하여 처리코자 합니다

주중권위원 : 별도 협의부 지장있는것에 대하여는 현실화
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

간 사 : 그렇습니다

김준성위원 : 2개안건의 보충은 어디 어디입니까

간 사 : 2번째 시흥연세상가와 22번째 시흥협동상
가조

이철원위원 : 시흥의 공익성에 앞서야한다 그리고 앞으로는
이런 현상은 없어야 될줄안다 참고로 시당
국에서 처리방침에 나타난바와 같이 관공
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엄격한 거제와 확인
감독이 있어야 될줄안다

간 사 : 법정시설을 갖추도록 조건부 지시에 의해 완전
시설을 갖춘후에야 허가가 되는거죠

상정파장(대) : 보충설명(생략)

부위원장 : 법정시설이란

상정파장(대) : 소방도로, 주차장등 기준시설이죠

김종성상임위원 : 현재로서는 시설개수명령을 할수있는거죠

그러므로 우선 현실화시켜 법제시설을 명명
한후 조건부로 허가 한다는 것입니다

부위원장 :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심의
활발하고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
에서 담당해야 하니까 별 문제점이 없다면
현실화시켜줌이 가히지 않나

이우현위원 : 시장 심의 기준으로 보면 시장과의 거리가
500m 확보되는 3000로 되어 있는데 그법을
무시할수는 없지 않나

간 사 : 그 기준이란 당사가 심의기준을 만들어
놓은것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같은것은
없습니다

나상기위원 : 현실화시키자는 당국의 방침에 대하여는
이해가 가나 우선 현실화시켜볼성우 가장
문제가 되는것이 주차시설 같은 것일것입니다

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가
취해 서야 할것이다.

행정파장(대) : 현실화시켜줌과 동시에 행정시설을 갖추어
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명령이 이행된 후에
취급해주려는 것임이다

위원질문 : 제안 동의

안건 // : 도시계획도로(재개발지구내) 신설

김재발계장 : 제안 설명생략

나상기위원 : 현재도 사람이 다닐수 있는 소로가 있는데

간 사 : 새로히 지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국에서

보상을 주어 우선 도로를 확보하려는 것이요

주중권위원 : 전체적인 종합 재개발계획과 관련 검토되어

야 할게 아니냐

전체 종합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없었지

간 사: 전체 종합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 시설후
관 건설에 따른 사업시행의 우선으로 할가
위한 것이지요

장민주위원 현시설후관건설부처와 전회국사이 아니냐

간 사: 그렇습니다

위원 원동: 제안등의

부위원장: 이상으로 75년도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



결의번호		결의사항
결의연월일	1975. 1. 21. 제 1회	

도시계획시설(노외주차장)결정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결의안건

제출자	서울특별시
제출연월일	1975. 1. 21.

3. 도시계획시설 (노외주차장) 결정

< 의결주문 >

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시설결정에 대한 부의안건
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

가. 시설조서

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노외주차장	우이동 198 외1	4,442.5 [㎡]	영진고동 및 영진 여객주식회사
	198 외2	(1,325 ㎡)	

나. 결정사유

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은 시설면적으로 시설개선 명
령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(우이동 - 수유동
간 25[㎡]) 용지가 수용되고 잔여지로는 협소하여 시
설개선과 차량수용이 불가능하여 인접지에 용지 확보하여
2개사 공동으로 주차장과 부피시설을 하여 시민편익 증진과